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35

발의연월일: 2021. 9. 3.

발 의 자:정청래·김주영·송갑석

오영환 · 임오경 · 박성준

강득구・권인숙・이수진비

송재호·김영배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는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있지만 가해자 처벌, 긴급조치 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검찰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신변안전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신고자법」 등을 준용해 신변 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 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 귀가 시 동행
-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
	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
	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
	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
	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
	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
	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
	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u>한다.</u>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
	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
	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
	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
	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

<신 설>

 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

 청할
 수
 있다.

-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검 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 시 동행
-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

 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

 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조치